

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김경자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
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,

□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 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 조정과 시민
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두
도록 하여 인권침해 사항의 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신
장시키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.

또한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「서울시인권정책회의」를 주관하도록 하
여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관계 부서 간의 협의·
조정을 통해 인권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
며,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
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